

보도시점 2025. 9. 16.(화) 11:00 (2025. 9. 16.(화) 석간)

폴리텍대학, 건설분야 기술인력 부족 해소 지원

-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외국인 숙련기술 인력 양성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1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장 윤학수)와 건설분야 외국인 숙련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의 국내인력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감소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국내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대상 건설분야 산업학사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현장 전문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선발 △전문건설 분야 교육 △건설회원사 취업 연계 △비자·체류자격 제도 개선 협력 등을 추진한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폴리텍대학은 지난 50여 년간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라며, “다가오는 생산가능인구 급감 시대에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체계 고도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경영관리실 홍보부	책임자	부 장	구연욱 (032-650-6740)
		담당자	차 장	박미선 (032-650-6742)
담당 부서	기획조정국 대외협력부	책임자	부 장	강영아 (032-650-6664)
		담당자	과 장	고아라 (032-650-6665)

□ **협약식 개요**

- **(일시)** '25. 9. 16.(화) 11:00~11:40
- **(장소)**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 **(협약주체)** 한국폴리텍대학, 대한전문건설협회
- **(참석)**
 - 한국폴리텍대학: 이철수 이사장, 기획조정국장, II대학장 직무대리 등
 -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중앙회장, 상임부회장, 기획관리본부장 등

□ **주요 내용**

- **(목적)** 내국인력 고령화 및 청년층 유입 부진 등으로 인한 건설분야 전문기술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산학협력 추진
- **(주요 내용)**
 - 외국인 학생 유치 및 선발
 - 전문건설 분야 교육훈련
 - 전문건설업 관련 국내외 홍보 및 정보교류
 - 협회 회원사 취업 연계
 -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및 체류자격 관련 제도개선 등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1:00~11:05	양 기관 및 참석자 소개	
11:05~11:15	양 기관 인사말씀	
11:15~11:20	양해각서 낭독	
11:20~11:30	양해각서 서명·교환	
11:25~11:40	기념촬영 및 폐회	

※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우수 외국인 건설 인력양성 및 전문건설업체 연계를 위한

업무 협약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한국폴리텍대학교(이하 “양 기관”이라 함)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우수한 외국인 건설인력 양성 및 전문건설업체 인력수급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우수한 외국인 전문건설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인 유치, 교육·훈련, 홍보, 취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전문건설사에 공급함으로써 국가의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 칙) 양 기관은 본 합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한다.

1. 외국인 학생 유치 및 선발
2. 전문건설 분야 교육훈련
3. 전문건설업 관련 국내외 홍보 및 정보교류
4. 협회 회원사 취업 연계
5.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및 체류자격 관련 제도개선
6. 기타 상호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

제4조(비밀유지)

1.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생성·습득될 수 있는 정보 및 기밀사항에 대하여 양 기관의 내부규정 등 보안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 하며, 상대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련 정보를 정부 및 국회에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일방당사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위반당사자에 대한 통지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통지가 위반당사자에 도달한 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제1항의 의무는 본 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도 유지된다.

제5조(법적 구속력) 본 협약의 내용은 제4조(비밀유지)를 제외하고 쌍방 간에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

제6조(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해지되지 않는 한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단, 협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양 기관의 별도 서면 통보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약정 파기에 대한 양 기관의 합의가 있을 시에는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개 정) 개별 협력 사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한 시기에 양 기관이 상호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으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협력한다.

협약기관은 상기 내용에 합의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관별 대표자가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9월 16일



회 장 윤 학 수



한국폴리텍대학

이 사 장 이 철 수



▲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그린건축과에서 시멘트 응결 시험 실습을 하고 있다.



▲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그린건축과에서 블리딩 시험 실습을 하고 있다.